

넷째, 수출입 기업의 업종별로 제1자 물류(1PL) 혹은 제2자물류(2PL)에 비한 3PL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유형성, 반응성, 공감성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1PL이나 2PL과 비교한 3PL의 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 수출입 기업의 업종별로 인지하는 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3PL 업체는 현재 1PL이나 2PL을 이용하고 있는 하주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자사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법(tool)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번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 나라 수출입 기업에 있어 제3자 물류의 활용률은 39.1%로 나타났는데, 이는 Cooke(1998)가 1997년에 조사한 미국기업의 65%, Peters, Lieb and Randall(1998)이 영국과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76%, Dapiran, Peter et al.(1996)이 1995년에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60.7%, Bhatnagar, Rohit et al.(1999)이 1998년에 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60.3%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 3PL 도입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는 물류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하고 현행 법규 및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5. 한중정기항로에서 국적선사의 문제점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해운경영학과 이 용 호
지도교수 안 기 명

본 연구는 해운산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남북화해 시대와 더불어 물동량이 증대되고 있는 한중항로에서 국적선사가 선복과잉, 중국 측의 폐쇄성과 제도적 장애요인 때문에 당면한 문제점과 국적선사들의 항로운영과 영업망구축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과 국적선사들의 경영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데 연구의 의의가 돋보인다.

특히 본 논문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정차 지속적으로 증대되리라고 전망되는 한·중항로의 주요애로요인으로 과다경쟁에 의한 운임dump 요인이 가장 큰 저해하는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소석울의 감소와 과도한 자본비 부담으로 인한 선박취득비용의 과중으로 분석되고 있어 한중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시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특히 활성화요인과 성과변수인 한중항로의 물동량 증대효과에 미치는 분석에서는 국내지원 환경개선 요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현지 규제개선 요인이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열경쟁 방지요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중항로 국적선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시키는데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마련하였다는데 논문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양국적선사의 한중항로 참여로 취항선박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선복 과잉과 신규참여 선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집화경쟁으로 악화된 운임시장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운임의 안정화 차원에서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동을 방지하려면 양국정부는 한중항로 유지 및 경영상황에 대하여 협의를 통한 합의방식의 기본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양국관련 선사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한중항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保證保險의 法的 性格에 관한 研究

海事法學科 金萬紅
指導教授 黃鉉源

본 論文은 歐美的 본드(Bond)制度를 繼受하여 발전된 保證保險에 관한 연구로서 保證保險의 法理에 관한 타당한 解釋論의 정립을 目的으로 하였다. 즉 保證保險이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料를 받고 債務者인 保險契約者が 債權者인 被保險者에게 契約上의 債務不履行 또는 法令上의 義務不履行으로 損害를 입힌 경우에 그 損害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新種保險으로서 商法 保險編에 규정된 典型保險이 아니라 그 法的 根據를 保險業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두고 있다.

保證保險이 保證性과 保險性의 二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法理解釋에 있어서 침 예한 의견대립을 노일 뿐만 아니라, 실무에 있어서도 때로는 保險의 法理가, 때로는 保證의 法理가 적용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保證保險에 있어서 保證保險의 保險性을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保險事故의 偶然性이 缺如되는지 여부와 保證保險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反公序良俗에 反하는가에 대하여 論爭이 많았다.

그리고 保證保險의 법적 성질을 民法上의 保證契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保險契約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保證保險의 保險料, 保險者 代位權의 性質, 保險金의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도 論難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은 保證保險의 本質에 대한 紛明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起因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論文은 保證保險의 法的 性格 및 法律關係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保證保險契約에 대한 體系의이고 統一의 解釋論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保證保險의 성질에 대하여 논란이 일게 된 原因중의 하나가 保證保險의 법적 근거를 公法인 保險業法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어 保證保險契約의 法的 性質에 대한 규명을 근거로 商法 保險編의 典型保險으로 편입시키는 立法論의 방법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論文은 소정의 研究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保證保險制度의 沿革과 外國의 立法例, 각종 保證保險契約과 大法院判例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保證保險과 유사제도인 責任保險, 信用保險, 「본드」와의 比較法의 연구를 통하여 다른 측면에서 保證保險의 성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은 保證保險은 어디까지나 保險契約이며 따라서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保險契約에 관한 規定이나 法理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保證에 관한 民法의 規定은 從의·補充的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保證保險의 保險料는 保證의 手數料가 아닌 위험부담의 대가로서 납부되어야 하는 保險料이어야 하며, 保證保險의